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다2355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다23557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6595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7가단3075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구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일광, 이지연

판결선고 2021. 6. 30.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659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이 양도담보계약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담보제공행위의 사해성 및 양도담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